

의안번호	2220661
의 퇴 인	장종태 의원
회 답 일	2026. 9. 2.
추 계 번호	26A4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60만원, 2031년 1,36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6,540만원(연평균 1,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안 제34조제17호 신설)	6.3	6.4	6.5	6.7	6.8	32.7	6.5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 (안 제71조제8호 신설)	6.3	6.4	6.5	6.7	6.8	32.7	6.5
합 계	12.6	12.8	13.0	13.4	13.6	65.4	13.0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제17호 신설 (예산안의 첨부서류)	○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추가함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34조의2 신설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추계서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대출 잔액의 연도별 재정소요,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의 재정소요 비교를 포함하여야 함 - 추계서의 작성 기준·방법 및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3	안 제71조제8호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추가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제17호 신설 (예산안의 첨부서류)	○	
2	안 제34조의2 신설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71조제8호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대상은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로 추가함에 따른 보고서 발간 비용임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인쇄비 단가기준(2026년도 예산안 기준)을 준용하여 추계하며, 국회에

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6.3)을 적용함

- 202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본보고서 인쇄비는 총 5,688천원으로, 100쪽 분량을 500부 인쇄하는 것을 기준으로 페이지당 기본단가 8,180원과 부당 인쇄단가 101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¹⁾

* 국가재정운용계획 본보고서: $[8,180\text{원} + (101\text{원} \times 500\text{부})] \times 100\text{P} = 5,688\text{천원}$

[표 2]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7~2031년

(단위: %)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3.

□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터 적용됨
 -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3조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개정안이 해당 제출 기간 전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발간비용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안 제34조제17호)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270만원(연평균 650만원)으로 추계됨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는 단권으로 인쇄하며, 105쪽 분량*의 보고서를 500부 인쇄한다고 가정하였음

1)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9. p. 462.

*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 중 개정안과 같이 특정 재정지원 수단별 재정소요를 집계하는 ‘조세지출예산서(158쪽)’,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51쪽)’의 평균 분량

- 인쇄단가는 202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본보고서의 인쇄비 단가기준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함
 - 2026년 기준 인쇄비: $[8,180\text{원} + (101\text{원} \times 500\text{부})] \times 105\text{쪽} = 6,161\text{천원}$

[표 3]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추가	6.3	6.4	6.5	6.7	6.8	32.7	6.5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안 제71조제8호)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270만원(연평균 650만원)으로 추계됨

-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는 단권으로 인쇄하며, 105쪽 분량*의 보고서를 500부 인쇄한다고 가정하였음
 - * 안 제34조의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추가되는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와 동일한 분량으로 가정함
- 인쇄단가는 202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본보고서의 인쇄비 단가기준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함
 - 2026년 기준 인쇄비: $[8,180\text{원} + (101\text{원} \times 500\text{부})] \times 105\text{쪽} = 6,161\text{천원}$

[표 4]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추가	6.3	6.4	6.5	6.7	6.8	32.7	6.5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